

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

해소를 위한 특별법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필수의료를 ‘국민의 생명,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’으로 정의함(안 제2조).
-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시·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).
-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추진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).

- 필수의료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, 필수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 필수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)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수의료인력 양성, 지역필수의사 지원, 필수의료취약지 지원,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, 기반시설 강화, 연구개발 촉진, 우수사례 보급 및 인식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).
- 필수医료를 집중적·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(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).

II. 검토 의견

- 제정안은 제5장에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나 「국가재정법」 제4조제3항은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하되,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「국가재정법」(의안번호 제2212198호, 제2201623호, 제2200695호)의 개정이 필요함.

- 그 밖에 필수의료의 관리주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Ⅲ. 관계기관 의견

-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.
 - ① 「국가재정법」 제4조제3항은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하되,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「국가재정법」의 개정이 필요함.
 - ② 안 제27조의 세입 항목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통상 목적세 등 독립적인 세원을 세입으로 하나, 제정안은 보통세를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구속금지 원칙 등 조세·재정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, 특히 관세·부가가치세는 기존 조세의 목적세화로 조세수입의 분절적 운영, 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하 초래 우려가 있음.
 - ③ 안 제29조는 특별회계의 특정한 세입이므로 안 제27조의 세입 조항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④ 안 제5조의 필수의료종합계획에 수가체계 개선 및 비대면 진료·원격 협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.

제정안	기획재정부 수정 의견
제27조(세입)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29조에 따른 전입금 2.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제29조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 ①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. 1. 「개별소비세법」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 2. 「관세법」에 따라 담배(「관세법」 별표 관세율표의 제24류를 말한다.)에 부과되는 관세액 중 「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」 별표 1 관세액 전입대상 수입농림수산물인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액을 제외한 금액 3. 「관세법」 제4조 및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담배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액 4.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납부되는 부가가치세액의 1,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 제5조(필수의료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5.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	제27조(세입)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「개별소비세법」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 2.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,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<삭 제> 제5조(필수의료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5.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관련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개선에 관한 사항 6. 비대면진료 등 의료 공급 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. (제정안 제6호와 같음)

(전문위원 박 혜 진)